

고 시

●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 - 678 호

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

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자율주행자동차법”이라 한다) 제7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 및 변경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2년 11월 29일

국 토 교 통 부 장 관

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현황

구분	시범운행지구의 명칭	위치	관할 시·도
1	부산 오시리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	부산광역시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부 구간	부산광역시
2	익산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	전라북도 익산시 익산역 일대	전라북도
3	충청권 광역교통망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	오송역~세종터미널~반석역 BRT 구간	충청북도, 세종특별자치시, 대전광역시

부산 오시리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

1. 시범운행지구의 명칭

- 명칭 : 부산 오시리아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(Busan Osiria Autonomous Vehicle Pilot Zone)
- 관할 시·도 : 부산광역시

2.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(연장)

구분	위치	면적 또는 연장
1	부산광역시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부 구간 (6개 도로 총 4.75km)	4.75km
계		4.75km

3.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



4.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

○ 지정목적

- 단지 내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에 대한 이동성 및 편의성 향상을 위한 대체 교통수단 확보
- 승용차 중심의 심각한 교통난 해소를 위한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

○ 지정기간 : '22. 11.29.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

5.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

○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

- 「자율주행자동차법」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
-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
-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
-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

○ 조례의 제정(예정)

- 부산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관련 조례 제정 예정

○ 도입이 예상되는 자율주행 서비스

-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순환하는 고정노선기반 수요응답 셔틀버스 서비스

○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·시범운행 지원에 관한 사항

- 시범운행지구 내 교통신호 및 기타 안전정보 제공
-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차고지, 전기차 충전소 제공
- 정밀도로지도 기반 자율주행 관계 플랫폼 구현 및 제공
- 자율주행자동차 활용 여객운송 사업에 대해 부산광역시 조례(예정)에 따라 보조금 지급

○ 자율주행자동차 연구·시범운행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

- 신호정보·안전정보 등 제공을 위한 C-ITS 인프라 구축
-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안내 표지판 및 도로노면표시 설치
- 운행노선에 대한 임시정류장 및 관련 도로 교통시설 설치·운영 지원
- 기타 부산광역시 조례로 정하는 사항

○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

· 허가조건

- 운행 예정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가능영역(Operation Design Domain, ODD)이 본 시범 운행지구의 운행구간 및 운행 형태에 적합해야 함
- 구간별 제한속도(50km/h) 이하의 속도를 준수하며 운행할 수 있어야 함
- 자율주행차량 운행을 위해 운행 전 안전관리자 겸 운전자는 사전 승인을 받은 자로 상시 배치하여야 함. (차량 제어권 통제 가능한 자, 주행 중 고장 대처 가능한 자, 안전관리 교육 이수자 등)

· 허가대수의 상한 : 총 4대 이하 ('23년 2대 이하, '24년 이후 4대 이하)

구 분	주요 내용	비고
고정노선기반 수요응답 셔틀버스	오시리아 관광단지 내 정해진 노선을 수요응답으로 순환하는 유상운송 서비스	

* 세부사항은 유상운송특례 발급 전 사전협의를 통해 조율

· 특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

- 자율주행과 관련된 정보를 기록할 수 있는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 부착 및 보관
- 악천후 및 비상상황 등 자율주행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없거나 주행 상황에 안전하게 대응할 수 없는 경우 안전요원이 개입하여 수동으로 운전해야 함
- 정기 성과보고서, 분기별 운행실적 등 부산광역시가 요청하는 사항들에 대해 협조해야 함
- 본 시범운행지구 운영 정책에 따라 운행 빈도·요금을 설정해야 함
- 기존 버스 배차시간 등을 고려한 부산광역시의 운행 대수·시간 조정에 따라야 함
- 본 시범운행지구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해야 함

○ 기타

- 여객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허가 신청 절차, 안전관리 규칙 등 본 시범운행지구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고시·공지 예정

6.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

- 홈페이지 : 부산광역시청(www.busan.go.kr)
- 문 의 처 : 부산광역시 공공교통정책과 지능형교통팀(051-888-3922)

익산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

1. 시범운행지구의 명칭

- 명칭 : 익산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
- 관할 시·도 : 전라북도

2.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(연장)

구분	위치	면적 또는 연장
1	전라북도 익산시 관내(익산역 서부광장 ~ 배산체육공원)	2.9km
2	전라북도 익산시 관내(익산역 환승장 ~ 익산고속버스터미널)	1.6km
3	전라북도 익산시 관내(익산역 환승장 ~ 원광대학교,병원)	3.2km
4	전라북도 익산시 관내(익산역 환승장 ~ 전북대학교)	2.2km(구간3과 0.2km 중복)
5	전라북도 익산시 관내(익산역 동부광장 ~ 역골주차장)	1.6km(구간1과 0.6km 중복)
계		10.7km

3.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



4.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

○ 지정목적

- 익산시 일원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확대로 신교통수단 정착
- 자율주행이 도시교통으로 정착하기 위한 다양한 교통환경 접목
- KTX익산역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을 활용한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 도시 실현

○ 지정기간 : '22. . .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

5.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

○ 시범운행지구 적용되는 규제특례

- 「자율주행자동차법」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
-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
-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
-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

○ 도입이 예상되는 자율주행 서비스

- (구간1) 익산역 서부광장 ~ 배산체육공원, (구간2) 익산역 환승장 ~ 익산버스터미널, (구간3) 익산역 ~ 원광대학교·병원, (구간4) 익산역 환승장 ~ 전북대학교, (구간5) 익산역 동부광장 ~ 역골주차장을 경유하는 대중교통형 순환 자율주행 서비스

○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·시범운행 지원 및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

- ITS 인프라로 시범운행지구 내 모든 교차로의 교통신호 및 기타 안전정보 제공
-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차고지 및 전기차 충전시설 등 지원시설 구축
- 사업자 서비스모델 노선에 따른 정류장 설치 및 관련 도로·교통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
- 신호정보 등 제공을 위한 C-ITS 인프라 구축
- CCTV 활용 도로 위험상황 실시간 인지 및 대응 서비스 제공 추진
-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안내 표지판 및 도로 노면표시 설치
- 자율주행자동차 정류소 표지판 및 정차면 설치
-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해 전라북도, 익산시시, 관계기관(경찰청, 소방서, 응급의료센터), 여객의 유상 운송사업자, 보험사, 견인업체 등 비상연락체계 구성
- 안전운행 준수 지침 등 안전 확보를 위한 규칙 마련

○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

· 허가조건

- 운행 예정인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가능영역(Operation Design Domain, ODD)이 본 시범운행지구의 운행 구간 및 운행 형태에 적합해야 함.
-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에 대한 지휘·감독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실증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
- 서비스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제어권 전환, 주행 중 고장 등에 대처가 가능하고 안전관리 관련 교육을 받은 안전관리자를 지정(다수 지정 가능)하여 강릉시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운행 시에는 해당 안전관리자가 자율주행자동차에 상시 탑승해야 함

- 사고시 대응 방안(사고차량 이동, 비상연락망 등), 비상 시 개문방법, 차내 소화기 표식 및 비상탈출용 망치 위치(차량 규모에 따라 필요 시) 등을 포함하는 안전관리방안을 제출해야 함
- 특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
 -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속도로 운행하여야 함
 - 익산시의 시범운행지구 운영 정책에 따라 운행 빈도 및 요금을 설정하여야 함
 - 기존 버스 배차시간 등을 고려한 익산시의 운행 대수·시간 조정에 따라야 함
 - 기상·도로상황에 따른 관할 시·도의 운행 조정 또는 제한에 따라야 함
 - 자율주행차량 운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승인 받은 안전관리자 겸 운전자를 상시 배치하여야 함
 - 익산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안전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함
- 허가대수의 상한 : 총 8대('23년(2대)부터 단계적으로 확대)
- 자율주행 서비스·실증 모델
 - 도심순환 셔틀버스 유상운송 운행 구간 및 범위 : 시범운행지구 일원
 - 도심순환 셔틀버스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구간 및 범위 : 한정면허 발급 범위

구 분	주요 내용	비고
도심순환 셔틀버스	도심에서 순환하여 운행하는 셔틀버스	

* 세부사항은 유상운송특례 발급 전 사전협의를 통해 조율

6.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

- 관련 고시·공고 : 전라북도(www.jeonbuk.go.kr), 익산시(www.iksan.go.kr)
- 문의처 : 전라북도 교통정책과(063-280-4447), 익산시 도시전략사업과(063-859-7423)

충청권 광역교통망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

1. 시범운행지구의 명칭

- 명칭 : 충청권 광역교통망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
- 관할 시·도 : 충청북도, 세종특별자치시, 대전광역시

2. 시범운행지구의 위치 및 면적(연장)

구분	위치	면적 또는 연장
1	오송역~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~반석역 BRT 구간	32.2km
계		32.2km

3. 시범운행지구의 지형도



4. 시범운행지구의 지정목적 및 지정기간

○ 지정목적

- 광역 지자체 간 장거리 여객운송 서비스에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자율주행 기반 광역교통체계를 선도하고 충청권 미래차 클러스터 조성

○ 지정기간 : '20. 12. 8.부터 지정 해제 시 까지

5. 시범운행지구 운영계획의 주요내용

○ 시범운행지구에 적용되는 규제특례

- 「자율주행자동차법」 제9조에 따른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
-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
-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 표준에 관한 특례
-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도로시설에 관한 특례

- 시범운행지구 내 자율주행자동차 연구·시범운행 지원 및 안전확보에 관한 사항
 - 자율주행자동차 전용 차고지, 전기차 충전소, 정비시설 제공(세종특별자치시 집현동 일원 등, 제공 방법 등은 관할 시·도가 별도 공고)
 - 「자율주행자동차법」 제19조에 따른 책임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음(관할시·도의 예산범위 내, 구체적인 지원 규모 및 지원 방식은 관할 시·도가 별도 공고)
 -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안내 표지판, 필요 시 도로노면표시, 오송역 버스환승센터 내부 및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전용승강장 설치
 - 한누리대로(세종특별자치시 연동면 용호리-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) 구간에서 C-ITS로 안전정보(교통신호정보, 보행자검지 정보 등) 제공이 가능하며, C-ITS 인프라는 전 구간으로 확대 추진
 - 빅데이터 관제센터를 통해 자율주행 교통, 날씨, 행사 등의 정보 수집·제공
 - 시범운행지구 안전매뉴얼 마련(관할 시·도가 별도 고시)

○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

- 허가조건
 -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의 시범운행에 대한 지휘·감독 및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실증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함
 - 시범운행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는 50km/h~80km/h의 범위의 속도에서 운행할 수 있어야 함
- 허가대수의 상한 : 총 5대부터 총 10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
- 특례를 받은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
 - 시범운행에 활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에는 해당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어할 수 있는 자가 항상 탑승하여야 함
 - 각 종점(오송역 버스환승센터, 반석역)에서는 운전자가 직접 운행하여야 함
 -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속도로 운행하여야 함
 - 관할 시·도의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운행 빈도 및 요금을 설정하여야 함
 - 기존 버스 배차시간 등을 고려한 관할 시·도의 운행 대수·시간 조정에 따라야 함
 - 기상·도로상황에 따른 관할 시·도의 운행 조정 또는 제한에 따라야 함
 - 일반 차량과의 접촉 우려가 있는 시범운행 시 운행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별도의 안전요원을 지정하여 배치하여야 함
 - 충청권 광역교통망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안전매뉴얼을 준수하여야 함

○ 기타

- 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허가 시 운행구간·운임 등이 포함된 여객운송계획을 관할 시·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 예정
- 한정운수면허 발급 요건,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할시·도가 별도로 공고 예정

6. 관련 자료의 열람방법

- 충청북도 홈페이지(www.chungbuk.go.kr), 문의처 : 산업육성과(043-220-8474)
-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(www.sejong.go.kr), 문의처 : 경제정책과(044-300-4034)
- 대전광역시 홈페이지(www.daejeon.go.kr), 문의처 : 특화산업과(042-270-0392)